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604

발의연월일: 2021. 9. 16.

발 의 자 : 홍정민 · 김민석 · 민형배

정희용 • 변재일 • 신정훈

유정주 · 김정호 · 김승남

강선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립지원에 필요한 경제적지원이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아동의 자 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사후관리"를 "사후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 할수 있다.

제3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 지급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렁렁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u>사후</u>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u>사후</u>
<u>관리</u>) (생 략)	<u>관리 등</u>)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
	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6조제
	1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
	여 사례관리를 실시 할 수 있
	<u>다.</u>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제38조(자립지원) ①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
	<u>지급</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 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 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